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

일시: 3월 31일 3시

장소: 서울대 박물관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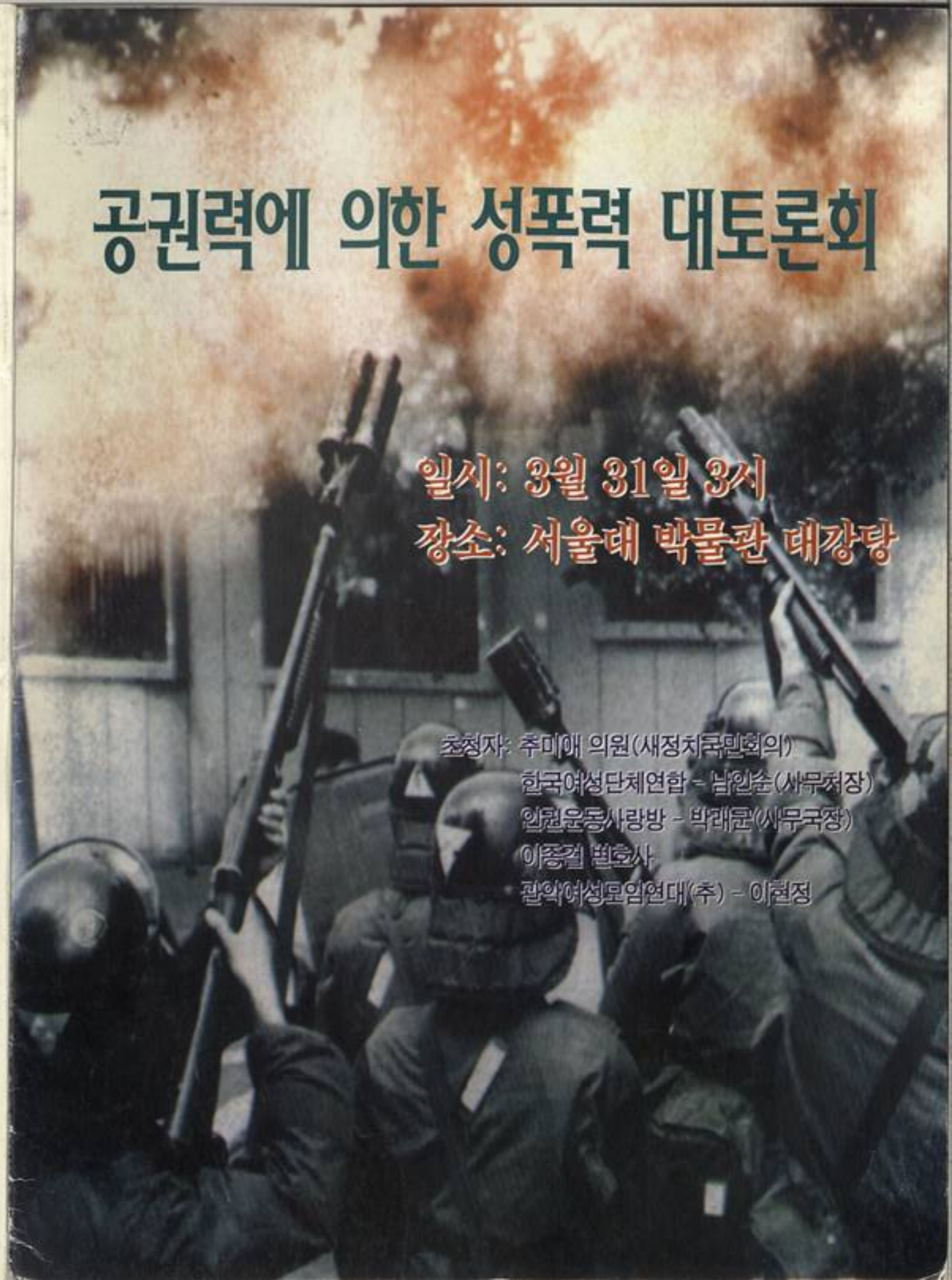
초청자: 추미애 의원(새정치국민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 남인순(사무처장)

인원운동사랑방 - 박래운(사무국장)

이중걸 변호사

관악여성모임연대(추) - 이현정



Your body



is

the

battle ground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



장소 : 서울대학교 박물관 대강당

일시 : 3월 31일(月) 늦은 3시

초청자 : 추미애 의원 (새정치 국민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 남인순 (사무처장)

인권운동사랑방 - 박래군 (사무국장)

이종걸 변호사

관악여성모임연대(추) - 이현정

주최 :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

동국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여성자치연합,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추),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서울산업대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여성 행동위원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후원 : 연세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 토론회 진행순서

- ▶ 개회
- ▶ 토론회 취지발제 - 사회자
- ▶ 초청자 소개
- ▶ 사건개요 발제
 - 1) 영상자료 상영
 - 2) 영상자료 설명과 간단한 발제
- ▶ 초청연사 발제 1
 - 1)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폭력 일반에 대한 것,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그 한계에 대하여...
 - 2) 인권운동사랑방 : 공권력의 인권 유린에 대한 것, 그리고 인권의 유린이 여성에게 있어서 어떻게 성 과 연관되는가에 대하여...
- ▶ 사건이후 대응 및 진행상황 발제 - 대책위
- ▶ 초청연사 발제 2
 - 3) 추미애 의원 :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 게 된 배경과 이후 남성 국회의원들의 반응. 의원님 자 신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
 - 4) 이종걸 변호사 : 현행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것 (판례의 중요성 과 법획득의 의미)
 - 5) 여추 : 학내 성폭력에 대하여...
- ▶ 잠시 휴식
- ▶ 질의 · 응답 및 토론
- ▶ 정리 · 마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한물 간 일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토론회를 여는가? -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했다. 우리는 왜 지금 토론회를 열려고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지난 8월 말, '연행된 여학우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자제 한 상황과 함께 컴퓨터 통신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곧 학교 내에서 자보 화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그리고는 금방 잊혀졌다. 자보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쨌든 남의 일이었다.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의 경찰에게 연행된 여성을 맘대로 성추행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던 말인가? 공권력의 도덕성과 공신성에 대해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러한 경우 TV시사 프로에서 경찰이 연행자를 다룰 때에 좀 신경써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진단이라도 나왔어야 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탈선한 10대들에게는 부모들의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라는 수준의 이야기조차 공식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강력하게 떠올랐던 이야기들은 "빨갱이녀들 당해도 싸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성'에 대하여, 당해도 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나누는 전형적인 이분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한 여성'에게는 당할만한 짓을 했다는 것과, 실제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두가지 모두에 대해서 비난이 돌려지게 되었다. 자고로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뱉뱌이 말하고 문제제기하는 여성은 항상 뻔뻔스러운 여자로 인식되어 오지 않았던가?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늘 그렇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에게 '해결책'이라고 주입되어 온 것은 '경찰한테 성폭력 안당하려면 데모하지 말아라' 였다. 이번의 이 성폭력은 데모하지 말라는 아주 효과적인 위협이었다.

성폭력은 여자가 알아서 조심조심 피해가야 하는 것이라고 20년 넘게 배워왔다. 성욕유발 운운하며 성폭력 안당하려면 아한웃을 입지 말라는 말도 기가 막힐 판에, 성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성욕유발과 별 관련이 없는 일까지도 조심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경찰에 잡혀갈지도 모르니 데모하지 말고, 교수가 성추행할지도 모르니 대학원 가지 말고,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당할 수도 있으니 취직도 하지

말고, 밤길 위험하니 밤하늘을 보며 이생각 저생각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데이트 강간이라는 것도 있으니 연애도 하지 말고.....

"빨갱이녀들 당해도 싸다"는 말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성폭력을 두고 주장하는 여성유발론을 스스로 부인한 셈이다. 이것은 분명히 당해도 싸 년들을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이미 이것은 '도덕적이어야 하는 경찰의 본분을 잊은 일부 몰지각하고 성욕이 강한' 경찰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은 이로써 운동권 여학생의 기를 팍팍 죽일 수 있었으며, 이에 '여성의 성'은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의 모든 해석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범죄임에 분명한 그들의 행동이 당연시되고 심지어 정당화 되는 것을 보라.

이 사건을 두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여성을 유린한 성범죄라는 점과, 여성의 성이 저항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문제제기를 여론화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한 여성 국회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정감사에서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제대로 문제제기 되지 못하고 가십으로만 떠도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진지하게 공론화하고자 이루어진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박일룡 전 경찰청장의 "진압과정에서 있었던 사소한 실수는 불문에 붙이겠다"는 한마디 말과, 몇 남성 의원들의 인신공격으로, 이러한 움직임 조차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경찰의 도덕심을 회복하자'는 수준에서 논의되어서도 안될 문제이다. 우리는 성범죄가 묵인되고 오히려 조장되는 통탄할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회 도처에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이 일은 '데모하는 여학생들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논의도 풀어 보고자 한다.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이 사건을 잊기를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도 벌써 이 사건을 잊었는지도 모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은 결코 '한 물간 일'이 될 수 없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론화 되기를 바란다.

■ 사건개요

- 8.2 -3 시립대에서 서총련 통일축전
- 6 한총련 법청학련 남측대표로 류세홍, 도종화씨 한국 출발
- 8 경찰, 연세대학교 학생회관과 대강당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발부
- 9 정부, 범민족 대회.법청학련 통일 축전 강경대처, 압수 수색, 대회 원천봉쇄방첩내림 서울 지역 통일 선봉대 200명 연세 진입
- 10 남측 두 대표 평양 도착. 법청학련 중앙 위원회참가 통일 선봉대 1000여명 연대 진입
- 11 연세대 주변 병력 증가, 검문 검색 강화, 학내 전화도청시작, 학생 2명 첫 연행
- 12 제 7차 범민족대회 개막식
- 13 경찰 검문 검색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입시도 그 과정 중에 부상자 다수 발생, 제 2의 백양로를 중심으로 학생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 연행. 정부는 3개부처 장관의 담화문을 통해 통일 대축전 행사를 이적 행위로 규정
- 14 연세대 1차 침탈
헬기 투입되어 최루액 투하 시복 경찰 연대 진입하여 학생회와 동아리방 수색
학생들 학교 안과 밖에서 산발적 시위
제 7차 범민족대회 행사 진행
지금까지 연행학생 318명
- 15 홍대에 있던 100여명의 본대 학내 진입
경찰의 2차례의 침탈. 12대의 헬기 투입하여 최루액 형광액 투하.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엔 페퍼프고나 지랄탄 발포, 다수의 수포자가 생김
연대내에서 연행되는 학우들은 구타와 성추행을 당하며 연행. 경찰의 폭력성에 항의하는 시민에게도 경찰은 차치아와 최루탄으로 대응
- 16, 17 소강상태일 때 빠져나가는 사람 무차별 연행
원래 예정이었던 관문점 방문 일정과 집회를 취소하였고 오늘로 모든 행사가 끝났으니 안전 귀가를 보장하라는 한총련의 기자회견 계속되는 병력증강, 학우들 탈출 시도 실패

정부방첩-연세대 내의 모든 학생들 연행하기로 결정

경찰 측에서 진압하지 못하겠다는 진정서 제출, 그러나 청와대 반려 학내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곳 전부 철거경찰 110개 중대 1300여명의 전경 연대외각 봉쇄 후 헬기 10대 최루액, 형광액 살포하며 전경 50개 중대 6000여명 투입 학내진입. 이후 5시간 대치. 이과대와 종합관 완전 봉쇄. 수포발생자, 만성피로, 탈수, 탈진환자 발생. 복통, 생리통 호소하는 여학우들 많았음. 보건의료단체연석회의 소속 의사, 약사 20여명 진입시도. 경찰의 제지로 진입 실패

18 싸움 계속 진행. 건물 주변 전면 봉쇄. 일체의 학생 통행, 식품, 의약품 반입 차단. 서문쪽 주민들의 음식물 반입을 막기위해 주민증 발급 연행자 1752명, 49명 구속

19 전여대협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단체 여성들 연대앞시위: 학생들의 안전귀가조치와 무장경찰 해산, 여성용품과 의약품 반입을 요구하며 학부모들과 시위, 학부모님들 연행. 헬기 저공비행으로 종합관 옥상위 학생들 위협

20 이과대 단수
경찰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연세대 총 진압 작전 수행:
경찰의 종합관 5층 진입, 종합관 옥상으로 학생들 대피. 전경들 옥상 입구 바리케이트에 방화. 공포탄에 놀란 학우들 구석으로 몰리고 아래서 올라오거나 대형 헬기에서 내린 백골단에 의해 학우들 끌어 앉혀짐. 종합관 상황종료

이과대를 점거한 학생들 야산이나 서문을 통해 탈출 시도 연회 입체 교차로 쪽에서 1000여명의 학우들 연행. 근방의 가택 무차별 수색

종합관에서 잡힌 학생들은 이화대강당에서, 이과대에서 잡힌 학생들은 연희초등학교에서 가담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서울지역 경찰서로 보내짐. 무차별 구타와 신체적, 간접적인 성추행 자행

그 이후 성추행, 언어 성폭력, 성희롱 사례, 수사과정에서 계속 발견

■ 사건개요와 진행과정

8월 20일	한총련 진압과정 중 여학생 성추행 사건 발생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한명희 이하 여연) "한총련 강
22일	제진압 중 발생한 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8월 22일-9월 12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승훈, 이하 인권협) 인권피해 신고 센터 개설
	인권피해조사
	재산피해, 부상, 폭행, 고문, 허위자백, 성폭력 등에 대한 총조사 건 수108건 (남 38, 여 70) 중 성폭언 36건, 성추행 41건, 성추행목격 14건
9월 13일	인권피해 중간조사 결과 발표
19일	여연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10월 9일	에 관한 건의문"을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정무장관(제2)에 건의
	국회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의원 성추행에 대한 지상조사소위 결성을 요구
10일	여연 "품위 운운하며 진실을 외면한 신한국당의원들 각성하라" 성
15일	명서 발표
	여연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경찰청앞 거리캠페인"; 여연 "국회는 공권력에 의한 여대생 성추행에 관한 진
11월 6일	상조사를 즉각실시하라" 성명서 발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의원 진상조사를 요구
21일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 비상대책위 여의도 국회앞에서 "한총련 여
	대생 성추행 항의집회"개최
	한총련 진압과정중 일어난 성추행과 언어폭력에 대한 고소, 고발에 즈음한 기자회견
학생 단위들의 대응	
8월 말과 9월 초	이사건을 알려내고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의 자보전이 학교별로 산발
10월 초	적으로 진행됨
11월 말-1월 초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규탄문화제 "너희가 X를 믿느냐" 개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소, 고발 내용의 기소촉구를 위한 1차 서명
	운동 전개. 서울대, 서울 산업대, 한양대, 동국대, 연세대에서 학생과 시
	민 대상으로 485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의 담당검사인 조정한 검사에
	게 보냄.
	서명운동을 계기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구성
97년 3월 20일 현재 이 사건은 아직 고소·고발된 상태로 검찰 수사중에 있음	

성폭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남인순

1. 들어가는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 이전에도 수 많은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여성 자신의 품행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왔고 사회문제로 여기지도 않았다. 1984년 11월 민주화운동을 하다 연행된 청량리 경찰서의 여대생 추행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1986년 6월 부천경찰서의 권인숙 성고문사건, 윤간의 위험 속에서 가해자의 혀를 찰라 과잉방어로 피해자가 도리어 구속당한 변월수씨 사건(1988년),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한 여성이 경찰들에 의해 윤간을 당하고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한 강정순씨 사건(1988년), 외부에게 12년간 성폭행을 당해온 여자친구를 대신해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보은·진관사건(1992년), 어릴적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김부남씨 사건(1991년)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에서부터 법적 지원투쟁,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국가에 제도적 해결책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고 피해 여성의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책으로써 법과 제도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여성단체에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도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법률 근거로 가부장적인 시각을 가진 경찰, 검찰,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을 다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고 하는 2중, 3중의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나 한국 사회는 유교 전통의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가부장제 성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어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다. 현재 성폭력특별법에는 형법 32장에 따라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죄에 대한 해석이 '목숨을 건 반항'을 요하고 있어 여성의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 성을 참행한 것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혹은 정신적

인 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혹은 그를 초래할 수 있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행위를 뜻하며 아에는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의 위협, 강압 또는 자유의 일시적 박탈 등을 포함한다.

3. 성폭력의 실태

(1)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현황

그동안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많은 사건들이 공권력이라는 권력앞에 정당한 절차와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묻혀 버렸다.

1984년 11월 민주화운동을 하다 연행된 청량리 경찰서의 여대생 추행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뽑히는 때질, 위키발로 짓밟기, 나체로 기합받기(생리중

인 여학생까지), 유방주르르기 등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 여학생들에게 모욕을 주며 수치심, 좌절감, 모멸감을 심어 주었다. 데모 저지의 수단으로 야만적 성폭력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었다.

1986년 모든 국민을 경악케한 부천시 성고문 사건은 피해자 권인숙씨의 용기있는 대응으로 널리 알려지자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전대미문의 추악한 범죄는 전 국민의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고 반독재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1988년 12월 5일 대구 대현동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2명이 한여인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윤간하는 사건이 발생하

보호실에서 경찰들이 "나네 안에서 계속 재미 봤다네. 애 몇 나오겠다" 옆에 있는 남학우랑 여학우랑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야 나네 물도 했냐"라는 식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말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70여명 정도가 한 강의실에 잡혀 있었는데 전경들이 이렇게 악을 울리는 거예요. "야 나네 동료 여학생들 어떤지 아냐" "나네 여학생들 가슴을 만져 보니까 나네들이 벌써 다 한거 아냐냐 가슴이 벌써 다 쳐졌더라 어떤 애들은 가슴을 만져보니까 체녀갑지가 많아."

〈피해자 인터뷰 녹취록 중에서〉

었다. 이 사건은 가해경찰 2명을보호하기 위해경찰과 검찰이 하나가 되어 증거자료를 은폐, 조작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강정순씨에게 무고죄를 적용시켜 구속하면서 다시한번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에 대한 분노와 극도의 불신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외에도 78년 7월 17일 부산시 서부경찰서의 경찰과 방범대원이 몸수색을 한다는 미명아래 여성노동자를 목욕탕으로 끌고가 윤간하고 일방적 조서를 작성·날인한 후 구속시킨 사건, 84년 2월 24일 서울 청담파출소에서 있었던 김모양 성추행사건등 이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경찰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2) 친족성폭력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가족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생

각이 강하고 경찰에서도 이를 가족내의 문제로 치부하여 자체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 가운데 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인들에 의한 대리상당이 많고 그 피해정도도 임신이나 낙태, 가정파탄, 기출, 사회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개인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현행 특별법에 친족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서와 같이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과 배우자 등으로 확대시키고 친족내 성폭력 유형에 준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직장내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화된 직장내 성추행의 피해는 해고, 업무능력의 저하, 휴직과 같이 직장생활을 원만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내 성폭력은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용주의 예방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폭력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4) 공중밀집, 통신매체

좌석버스, 지하철 화장실에서의 추행 및 강간 위협 등 성폭력의 범위가 공공장소로 확대되고 있고,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인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4.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1) 방향

-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의 내실화
- 2)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 제도적인 장치 마련
- 3)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2) 과제

1) 성폭력특별법 개정

-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정의
- 친고죄의 전면 폐지
- 친족 범위 확대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조항 신설
- 강간의 정의를 '부녀를 강간하는 자에서' 타인을 강간하는자로 개정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조항에 장애인부류를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모두 포함

국제법적 원칙에서 본 공권력의 여성인권유린 문제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 연세대 사태에서 나타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에서 경찰의 집단 성폭력은 극에 달했다. 연행되었던 여학생들의 경우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경찰의 성폭행에 무차별로 노출되었다. 전경과 의경, 그리고 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거의 8월 20일 진압과정과 조사과정에서 성폭행에 무차별로 노출되었다. 경찰들은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심지어는 음부와 엉덩이까지 다듬었고, 어느 경찰서에서는 속옷 검사를 하기까지 했다. 이런 속옷 검사를 한 것은 여형사였지만, 유리창 너머 복도에서 전경과 의경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은 집단적인 성추행과 다름없었다. 또, 어느 경찰서에서는 당시 여름 옷차림의 여학생들을 다리를 벌리고 바닥에 앉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직접적인 모욕과 성추행도 문제지만, 당시에 행해졌던 상상하기조차 힘든 성폭행에 여학생들은 치를 떨어야 했다. 어느 여학생의 증언처럼 생전 처음 당하는 폭언에 진저리를 쳐야 했다.

588이나 가라. 이런 년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다 수출해 버려야 한다.

니네가 뭐 김정일 기쁨조냐. 북한으로 보내라.

니네 사수대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밤에 뭐했냐. 사수대한테 너네 몸대주고 살았지?

너희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 기쁨조나해라 이 씨발년들아

고년들 털 참 많게 생겼다

야 이씨발년들아 니네 위안부 노릇하려고 왔냐

돌 한번 던진 애들한테 한번씩 빨아 줘나

이처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 대목을 추미애의원이 그대로 옮겨서 경찰 성추행

종합관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단으로 끌려내려오고 종합관 앞마당에 줄지어 앉아 있을때까지 성추행 당했어요. 계단에는 전경들이 꼭 서있었고 한줄로 맞춰가지고 고개 숙이고 앞사람 어깨에 손 올리고줄지어서 내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가는 애들 순서대로 가슴을 덥씩 잡아가고 뜯었어요. 엉덩이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 따로 있었구요. 급하게 지나가니까 손을 탁 짚어 넣었어요. 빨리 지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해서 지나갔구요. 전경들이 계속 이야기 하는게 가슴이야 가리고 몸매이야가하고 얼굴좀 들어봐라 곤봉으로 고개 들게 하고 어디가나 그런 식이었거든요. "사수대 애들한테 맨날 몸대주지 않냐?" 그전에 연대안에 갇혀 있을 때도 전경들이 우리 건물에 대고 "야 이 씨발년들아 니네 위안부 노릇하려고 왔냐" 이런식으로 맨날 소리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행되는 날에는 "돌 한번 던진 애들한테 한번씩 빨아 줘나" 이런 이야기하고 어떤 전경은 와가지고 옆에 있는 애한테 "배고프지 않냐 나가면 밥사주겠다"애가 가만히 있으니 자기 혼자 그 애를 때리면서 웃으면서 "내가 밥사줄테니까 내것도 빨아 줘라?"라고 했어요.

<피해자 인터뷰 녹취록 중에서>

-신고의무조항 신설

-성폭력범죄 전담경찰제도 도입 및 피해자의 절차 참여

2) 여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시설 확대

-성폭력 피해여성을 피난처 확대 및 재정 지원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피해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 훈련

3) 경찰, 사법부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

-피해 여성을 모욕하는 남성 중심적 접근방식 및 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재교육

-경찰학교와 사법연수기관에 성폭력, 여성인권교육 필수화

4) 정부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이행 촉구

-1992년 정부가 내건 종합대책, 즉 초·중·고교에서의 성교육 강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여성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성폭력상담소 설치 유도, 비디오, 영화, 출판물에서의 성폭력 유발요인에 대한 규제강화, 경찰서내 여성상담실 확대운영,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이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5)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성교육 실시 확대 : 초·중·고교정규과목 설치 및 성교육 담당교사 재교육

-음란, 퇴폐물, 항택업소에 대한규제 강화 활동

6)매스미디어 활용

-여성인권의 인식 확대를 위한 공익광고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마련

부분을 문제화시켰던 것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폭행이나 성추행보다도 이런 성폭언에 의해 더 크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평상시의 분위기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떤 여학생의 경우 한 전경이 '전경차에 올라 타면 내년을 다 강간해 버리겠다'는 말에 실제로 강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떨었다고 한다. 그 많은 여학생을 그것도 전경차라는 조건에서 강간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그걸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공포스런 분위기에서 들었던 치욕스런 욕이었다. 인간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짐승같은 욕지거리에 여학생들은 수치와 더불어 분노를 느껴야 했고, 치를 떨며 울어야 했다.¹⁾

그러다가도 기자들이 오거나 하면 그런 언행을 멈추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의 항의에 경찰은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발뺌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가해 진술이나 사진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다. 특히나 전경이나 의경들은 진압박에 소속과 이름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성추행을 더 자연스럽게 자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명성).

그러나, 경찰의 이런 성폭행은 연세대 사태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며, 매우 진부할 정도로 전통적인 것이다. 단지 연세대 사태에서 경찰의 성폭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집단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더 부각된 것이다. 더욱이 인권단체들의 조사내용에 대해 추미애의원이 96년 10월의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을 폭로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후 피해 여학생 중 7명이 당시 박일룡 경찰청장(현 안기부 제1차장)과 황용하 서울경찰청장(현 경찰청장)과 현장 진압 중대장 등을 걸어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96년 11월). 또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도 검찰에 경찰을 고발했다. 이런 고소, 고발에 대해서 서울지검이 수사하는 듯이 보였지만, 소장 접수 4개월이 지난 현재도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아마도 검찰은 경찰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

2. 공권력의 성폭력은 계속 되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연세대 사태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86년 부천시 성고문 사건을 전후해서도 청량리 경찰서의 경희대 여학생 성추행 사건,

1) 전경들이 한 성폭언 중에 "일본군에는 위안부가 있었는데, 우리한테 위안부 하나 없다"는 등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성폭언도 꽤 많이 했다. 진압 경찰들은 민족의 치욕이고, 비극이었던 위안부마저 이처럼 여학생을 능멸하는 욕에 등장시켰던 것이다.

53인천시위 연행자에 대한 성고문 사건, 노동현장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윤간 사건 등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 56공 당시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또는 수사과정에서 성적인 모욕과 성추행, 성고문을 상대방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도 경찰의 이런 성폭력을 계속되었다.

96년 9월 19일 암사동 철거지역에서 감동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철거대책위원장이던 문연희씨를 옷이 벗겨진 채로 차에 태워 연행했다. 경찰들은 연행 이유를 물으며 차에 오르기를 거부하던 문씨의 옷웃이 약간 들리자 "여자들은 옷을 벗겨야 말을 더 잘 듣는다"며 강제로 옷을 벗겨 차에 태웠다고 한다.(인권하루소식 96년 9월 21일자)

96년 10월 4일 새벽 번3동 철거현장에서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설영덕(당시 한성대 재학중)씨의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든 뒤 수갑을 채워 50m 정도 끌고 가는 사건을 일으켰으며, 이에 다른 사람들이 항의하자 총기를 난사하기까지 했다.(인권하루소식 96년 10월 5일자)

올해 1월 병원노련 사무실을 수색 중이던 남대문 경찰서 형사들이 당시 압수수색 현장을 녹화중이던 여성 활동가에게 성적인 모욕을 주고, 성추행했다.

또한, 96년 4월 봉천동 철거 현장에서 전철순 철거대책위원장을 철거강파들이 성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했고, 이후 고소된 가해자들을 무혐의로 풀어주고 오히려 전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다. 범민련 사건으로 수배를 당했던 고애순씨는 96년 12월 초 경찰에 연행되었고, 당시 임신 8개월째로 접어들던 무렵이었다. 고씨는 경찰과 검찰을 거쳐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교도소에서 고씨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여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직후 태아를 사산하게 된 일이 있었다. 96년 남매간첩단사건으로 안기부에 구속되었던 김은주씨는 안기부 조사 과정에서 성적인 모욕을 당했다.

이처럼 공권력이 모성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는 커녕 무참히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반인권적인 것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격하시킨다.

이런 공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보여주는 태도는 가히 일방적으로 가해자 편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실제로 고소, 고발된 경찰이 이런 문제로 처벌을 받았던 예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²⁾

하지만, 문제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여성에 대한 이런 성차별과 성적인 폭력을

2) 성폭력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것이 검찰과 사법부다. 이를 공무원의 인권유린 실태와 처벌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96년도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 자료를 보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있고, 이런 관행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경찰(police)은 어원적으로 그리스어의 polis(도시)와 politeria(거주자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용어)에서 생긴 것이다. 경찰력(police power)의 개념은 그 사회 성원의 건강과 인정, 도덕 및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힘으로서 정의되었다. 국가의 대리인이 바로 경찰. 경찰은 국가의 권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의 구체화인 것.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경찰은 조금만 궤도를 벗어나도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가해자일 수 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감시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띠고 있는 경찰이 이를 어기고 성폭력을 저지른다면 이는 강도에게 칼을 쥐어 준 것 밖에 안된다. 공권력이 법과 상식으로 통제되지 못하면 이는 폭력 집단일 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경찰력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3.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권력의 성폭력의 문제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법을 따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무가 요구하는 높은 책임성으로 일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집행 공무원에는 법을 따라 임명되거나 선출된 공무원으로 경찰력의 행사자, 특히 체포와 구금을 행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경찰력이 군당국이나 국가 정보기구에 의해 행사되는 국가에서는 그들도 역시 법집행 공무원에 포함된다. 임무수행에 있어서 법집행 공무원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유지하고 지지해야만 한다.(전문)

무력의 사용은 엄격한 필요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무력사용은 예외적인 것이어야만 한다(3조)

어떠한 고문행위나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을 행하거나 선동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전쟁의 위협, 국가안보의 위협,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여타의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5조)

-1979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법집행공무원 행위 규칙

108.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데 있어 국가의 의무는 여성차별철폐 선언문 제4조에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난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간섭, 전통, 혹은 종교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들을 제거

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있어서 모든 적합한 수단을 지체없이 추구해야 한다. 제4조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살펴보자:

- (a)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철폐협정을 비준하는 것(4조 a)
- (b)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의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 행정적인 메카니즘의 개발에 관한 특정 지침서(4조 d)
- (c)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에 대한 지원과 재활이라는 면에서 특별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4조 g)
- (d) 사업, 경찰 관료들의 훈련(4조 i)
- (e) 교육과정의 개혁(4조 j)
- (f) 연구조사 증진(4조 k)
- (g)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국제 인권 메카니즘에 보고하는 것(4조 m)

248. 여성에 대한 관할기관의 폭력은 광범위하며 심각한 현상이다. 경찰이나 군관리가 명확치 않은 불평등한 상황에서 취하는 권력남용은 관련 인물이 비난을 받지 않는 사실과 함께 관할기관의 폭력이 조장되고 성행하게 만든다. 정부가 국가안보, 국가존속이나 도덕성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인물을 체포하려는 조바심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성 부재현상을 야기한다. 국민을 억압하는데 군사력을 동원하는 정부는 군관리하에 행해지는 폭력혐의에 대해 무반응을 보인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원인,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서(1996년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 제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들, 특히 그중 여성차별철폐조약 등에서 남성과의 차별 없는 평등을 유난히 강조한다. 93년, 유엔은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고 발표했다. 93년 유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최종문서인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은,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전체 인권의 집약적이고도 불가분적인 한 부분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의 결의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였다.

하물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두말할 나위없이 처벌받아 마땅한 것으로 규정된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4.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근절기 위한 방안

그럼, 현재 관행으로 굳어진 공권력의 성폭력 행위를 근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권리는 작은 사례들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결국은 질적으로 바꿈으로서 획득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려만 든다면 공권력은 계속 성폭력을 자행할 것이다. 지난해 연세대 사태에서 나타났던 현상도 피해자 여학생들의 움추러들었다. 이런 결과로 결국 7명의 여학생만이 사법기관에 고소한 것이다. 만약에 1백여명의 여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고소운동을 벌였다면 검찰이 지금처럼 미적미적하면서 각하할 날까만 잡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한 두려움을 불식해야 한다. 특히 이런 두려움은 매우 근거없는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단체나 인권단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육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이 절실하다.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은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 중심의 인권교육(명목상의)을 지양하고 실제로 인권 수호를 위해 경찰이 복무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진행되도록 제반 진보세력들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당국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유린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항의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법당국이 경찰의 인권유린을 자꾸 눈감아

주고,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 경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도록 부추김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인권기구들에 대한 호소와 항의를 조직하여 정부당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주장만으로는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의 노력이 특별히 경주되어야 한다.

전경들은 계단에서 내려와서 저희들끼리도 삼청교육대와 닮았다고 깔깔거리면서 사람들을 닮았습니까. 전경터에서 적의 포로를 잡은 것과 같은 대우를 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이 새발이 노니 이 참새만도 못한 년아 년 맞놈하고 잤나' 했고 남학생들에게는 '넌 맞놈하고 해봤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피해자 인터뷰 녹취록 중에서>

'남성중심적'인 공권력에 대하여

관악여성모임연대(추) 강예린

Q : 누나, 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에 대해 이야기하는가요?

A : 음, 지난 해 8월 연세대에서 학생들에 의한 통일축전이 있었잖아. 몇 년간 계속되어왔던 행사인데 굳이 작년에만 광폭하게 진압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지. 그 진압의 과정 중 진압경찰의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여학생들의 몸을 만지고, 굴욕적인 말을 남발했거든. 아무리 그들이 보기에 범법자라고 해서 - 사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 전이기에 범법자도 아니었지 - 그런 식의 인권유린을 집단적으로 자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려는 것이야.

Q : 하지만 왜 '경찰 내지 전경에 의한'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A :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해, 안보를 위해 힘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등의 기관들을 공권력이라고 하는건 알지? 하지만 이 공권력은 실제로 중립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단다. 국가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배권력과 지배권력에 의해 짜여진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나? 공권력은 자신이 기반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행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은 이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 지칭했단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시켜보자구나.

지금의 사회구조가 여성에 대한 끊임없는 소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이야기들,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오잖아. 그런데 이런 소외 내지 차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기에 계속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차별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에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 구체적으로 여성노동을 끊임없이 이류의 노동으로 분류하고, 가사노동을 여성들의 당연한 임무로 부여하면서, 그만큼의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지배집단(사회적 능력에서 대개 남성들이 수위를 차지하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남성지배집단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거야)에 의해 고착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을 하나의 대등한 인간이라기 보다, '성'을 매개로 한 주체로 끊임없이 규정 짓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는. 따라서 '성'이란 범주를 통해야만 여성은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이런 '성'이란 범주는 끊임없이 여성이 침범당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렸다.

혹시, 권인숙 사건이라고 기억하니? 성고문사건이라고 하면 더 잘알겠지? 여성을 기죽이는데에 '성희롱 내지 성폭력'만큼 잘듣는 것이 없다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사건이지. 공권력 자체가 하나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할 때, 이는 또한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 - 여성을 끊임없이 성적으로 묶어놓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공권력의 행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것이 많단다. 우리가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언명한 이유를 이제 알겠나?

Q : 아, 그렇군요. 공권력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권력이 남성중심적인 사고틀에서 행사되기 때문이군요?

A : 그리고 하나 더. 성추행이 행해지는 주체도 주체이지만, 그런 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또 다른 공권력인 검찰과 법정 역시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란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것도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들의 무수한 싸움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단다. 이를테면 신체부자유자인 여성에 대한 강간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 이를 달리 생각하면,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강간 역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 그것을 법획득이라고 하는데, 이는 판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이 판례라는 것 역시 사회의 지배적인 흐름들에 의해 규정받게 마련이야. 상대적으로 성에 대한 인지도가 봉건적인 나라에서는 판례로서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이 느리게 되겠지. 우리나라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 정신대에 대해 민족의 다른 민족에 대한 집단 성유린, 강간이라고 이야기 규정짓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어. 시세말로 폭팔된다는 것이지.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반일감정으로 인해 그래도 끝내 제대로 된 규정과 그에 따른 대응을 이루어내게 되었지.

이것 역시 그것을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내지 성적 인권침해로 규정하는데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회적 맥락을 이루어내야 가능할 것 같아. 우리는 그것 역시 원한단다.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짓는 것 자체가 여성 인권을 위한 법획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현행단계에 이런 식의 법획득이 가능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아. 고소와

하지만 현행단계에 이런 식의 법획득이 가능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아. 고소와 고발은 집단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기소가 되려면 특정인을 내세워야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어떠한 명칭도 달지 않은 전경일반에 대한 성추행을 어떻게 특정인을 내세울 수 있겠나. 구조적인 한계인 것이지. 이런 구조를 인정한다고 해도 현재 검찰의 미진한 수사상황에서는 특정인을 내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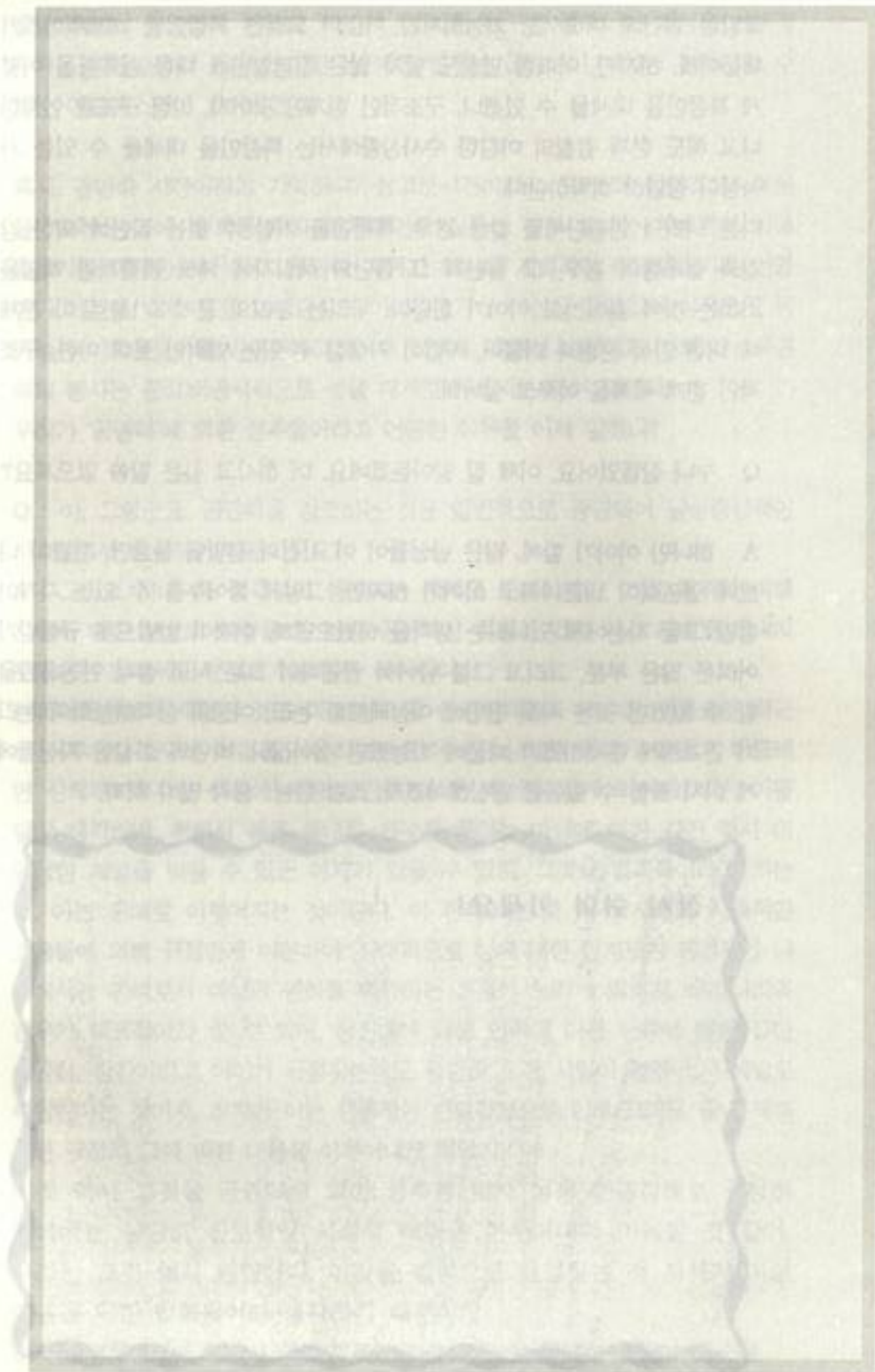
다른 나라의 인권단체들 같은 경우, 특정인을 가릴 수 없는 집단에 의한 강간과 성추행의 경우, 그 집단과 그 집단의 책임자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을 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 한단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제기들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법적인 토대 마련, 구조적인 한계 극복을 이루고 싶어해.

Q : 누나 잘들었어요. 이제 잘 알아들었네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A : 하나만 이야기 할게. 많은 남성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들으면, 전경이 나쁘네 공권력이 나쁘네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찍어누를 수 있는 자격이 정말 그들 자신에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으면해.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받기 어려운 많은 부분, 그리고 그를 넘어서 공권력이 그런 식의 성적 인권유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전반에 여성배제의 논리, 여성의 성적대상화의 논리가 공고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잖나. 비난의 화살은 자신들에게 다시 쏠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지. 그럼 안녕! 생각 많이 해봐.

잠시 쉬어 가세요!

1996년 8월 8일 서울에서 열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의 모습이다.



공권력의 성추행과 인권

국회의원 추미애

I.

96년 8월의 한총련 시위와 그 진압은 소위 「문민정부」가 집권하고 있다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일대 사건이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같은 주장을 같은 방법에 의존하여 외치고 있었고, 경찰은 경찰대로 군부 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는 진압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이성적 해결책도 존재할 수 없었다. 다만, 적대국과의 전쟁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이겨야만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혼란의 8월에, 나 자신은 재미 교포 간담회 및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차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던 중이었다.

나는 그곳의 라디오에서 다급한 목소리를 접하고 있었다. “우리들이 온갖 성추행과 구타를 당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한 시위 여학생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부끄러웠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서...

귀국하자마자 나름대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한 인권단체가 연세대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남학생 38명, 여학생 70명 등 108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추행 및 성폭언이 77건, 폭행이 86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행되었다가 불구속

등으로 풀려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광범위한 성추행 및 성폭언의 주체가 뒷골목의 깡패가 아니라 바로 국가 공권력이라는 사실이었다.

공권력이란 그 어느 상황에서라도 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집행되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더욱 커다란 힘을 가질 수 있다. 특히 10년간 판사를 역임했던 나로서는 법을 어긴 공권력은 그 자체로 이미 공권력으로서의 공신력을 상실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II.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와 일부 여학생과의 면담,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언론사 기자들을 비롯한 많은 목격자의 상황 청취를 통해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이 진실이라고 믿은 나는 지난 96년 10월 9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러한 사실-공권력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던-을 가감 없이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밝히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성추행을 폭로(?)하고 나서 나는 이에 대한 갖가지의

반응들을 보면서 적잖이 곤혹스러웠고 난 감해 했다.

이 문제를 폭로하면 "아니 이럴 수가...",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의법처리 해야..." 등의 당연한 반응을 기대했던 나로서는 오히려 온갖 비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견해는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원회관과 집으로는 온갖 욕설이 동반된 협박전화까지 걸려오기 시작했다. 빨갱이 짓을 했으니 당해도 싸다라는 전화는 일단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니 개의치 않았지만 "주사파의 국가공권력 무력화 전술에 밀려들고 있다", "대규모 시위 후에 항상 동정심 유발을 위해 이러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등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들어 보았던 내용은 어처구니 없었다.

우리 나라의 성 의식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특히 여성에게 엄격하다는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여성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성적 기준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이 당한 성적 폭행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것이 얼마나

3) 사실 폭로는 아니었다. 한총련의 연세대 시위가 진압된 직후부터 일부 인권단체와 여성단체가 연행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 광범위한 성추행 및 구타 행위가 있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였고, 몇 차례의 규탄시위도 있었다. 다만,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사회가 이를 눈감았을 뿐이다.

힘든 일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바로 얼마 전에 끝난 제183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국당의 모의원은 자신을 '정상배'라고 몰아세우는 한영애 의원에게 '계집애가 싸가지없이...' '걸레같은게.....' 운운하여 여성계의 커다란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여기서 고작 언쟁의 수단으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 남성들의 성 의식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해 했던 기억이 난다.

한총련 학생들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운동권의 국가공권력 무력화 전술', '혁명전술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성의식에 관한한 과도한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볼길 권유하고 싶다. 또한 과거 권인숙양이 자신에게 다가온 온갖 어려움을 딛고 성고문을 폭로했던 경험을 공유했으면 싶다.

96년 연세대에서 경찰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길에 엄청난 가시덤불이 있으리라 예감했을 것이다. 불구속 또는 훈방으로 풀려났던 학생들이 패심죄로 재구속되는 경우도 충분히 상상했을 것이다. 실제로 한 여학생의 경우 자신을 조사했던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받았고 이후에는 말문을 닫아 버린 일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용기와 소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었다. 특히 신문사의 기자들은 아무리 기사화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는데 국회의원의 발언이라 기사화 됐다며 감사해 하기도 했으며, 일부 인권단체와 월간지에서는 올해의 인물로 뽑아 주기도 했는데, 나는 이러한 모든 과분한 찬사가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용기 있게 폭로한 그 가녀린 여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전달자로서 그들을 대신해 말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III.

국정감사에서 경찰에 의한 성추행을 폭로했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이라도 그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분위기는 고조되었지만, 언론은 흥미위주 혹은 한건주의·폭로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방송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 언론들의 속성이야 익히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앞장서서 인권침해에 대해 분개하고 나서야 할 지식인 사회도 역시 침묵 내지 방조하는 듯 했다.

나는 그것이 한총련과 관련된 학생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한총련에 대한 지지로 비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한총련의 대변인이란 말을 여당의원으로부터 듣기가

지 했으니까.

그러나, 인권이란 상황에 따라 지켜지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하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인권은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호되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성별, 나이, 직업과 출신지역, 지니고 있는 사상 등에 관계없이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경우 인권에 대한 더욱 세심한 보호와 보장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은 당연히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항상 눈과 귀를 열어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에 의해 통제받는 권력을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저는 서울에 있는 모여대에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 20일날 연대 이과대 건물에서 나오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경찰차가 있는 곳까지 가는 과정에서 줄 서있는 전경들한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맞았거든요. 다리, 가슴, 골반, 어깨 이런대를 곤봉으로 맞았고, 군화발로 얼굴을 걷어차이고 다룬데도 견어차였어요.

건물에 왔다가 빠져나오면서 머리채를 끌려가면서 붙잡혔어요.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가는데 어떤 전경이 한 20미터 전부터 뛰어오더니 제 가슴을 군화발로 삼하게 찔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삼하게 아팠어요.

<피해자 인터뷰 녹취록 중에서>

聖域이 아닌 性域인 대학
성폭력,
더 이상 대학마저도 자유롭지 않다

관악여성모임연대(추) 이현정

1. 시작하며

작년,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학교 간의 논쟁을 일으켰다. 하나는 서울대 대학생들에 의해 이대에 보내진 음란 엽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대 대동제에서 벌어졌던 고대생들의 집단 소란 행위였다. 두 가지 모두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행해지던, 그저 묵과되던 일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및 고대의 몇 남학생들은 왜 갑자기 이대생들이 난리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인 것은 그동안 이러한 사건들이 슬하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반성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단순한 호의와 재미로 한 것 뿐이라는 서울대생의 변명, 성적 의도가 전혀 없는데 무슨 성폭력이라는 고대생들의 항변은 우리 사회에 있어 성폭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행되며 인정되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성폭력은 그야말로 한 여자를 붙들어 두고 강간하는 것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재미요, 아름다운 전통으로 상호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그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막히지?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애"라고 의기투합하는 동안 실상 그러한 행위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말이다.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위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폭력이며,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바로 그러한 남성들의 성적 우월 의식, 단지 그들의 재미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발생했다는 데에서 정확히 성폭력인 것이다.

학내 성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하나는 학생-학생 간에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단지 지금까지의 성폭력 문제가 직장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내에서의 교수-학생 사이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던 관계로 여기에서는 전자에 치중하도록 하겠다.

근대가 성폭력을 말한다



2. 학생-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먼저 최근에 발생하였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 검토해 보자.

- ① 96년 여름 지대학 : 학생회 간부였던 한 여학우가 급하게 준비해야 할 일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하다가 피로에 지쳐 잠시 여학생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한 남학우가 몰래 들어와서는 잠자는 여학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자던 여학우가 이상한 기척에 깨어 보니 그 사람은 이름 정도 알고 지내던 같은 과의 선배였다. 다음날 아침, 고민 끝에 여학우는 그 선배를 찾아 가 사과를 요청했지만, 그 선배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이후 여학우의 공개대자보를 통해 이 사건이 학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 ② 96년 봄 모 대학 사동아리 : 으레 그렇듯 늦은 밤까지 술자리로 이어진 동아리 MT, 새벽녘 한 여학우가 잠을 깨보니 바지의 지퍼가 열려져 있었다. 이상한 기분에 둘러보니, 가까이에서 또 다른 한 여학우가 웅크리고 울고 있었다. 두 여학우 모두 마찬가지로의 성폭력을 그날 밤 당했던 것이다. 가해자는 다름이 아니라 졸업한 동아리 선배로 오랜만에 MT에 동행했었다. 이 사건은 동아리 전체에 알려졌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들이 많았지만 대자보 공개와 함께 그 선배를 동아리 명단에서 제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 ③ 바로 얼마 전 97년 봄 모 대학 ○과 : 신입생 환영회 중 한 남학우가 후배 여학우에게 강간 미수의 성폭력을 시도했다. 그는 보통 때에는 착하고 과 일에도 성실 한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여간 이러한 일은 이번 한번 뿐이 아니며 다른 여학우에게도 행해졌다 한다. ○과 내부에서 대책위가 꾸려졌으나 같은 과 사람들 간에 발생한 일인 관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은 채 정리되었다.
- ④ 94년 모 대학 도서관에서 한 남학우가 여러차례에 걸쳐 여학우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대자보를 통해 공고되었다. 착실한 종교 신자이며 성실하게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남학우는 자기 자신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했다. 그는 결국 정신감정을 받기로 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자료집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은 학내 성폭력 이야기들이 쉬쉬하며 실제로 존재해 왔다. 아니, 지금이 순간에도 각종 모임 및 술자리에서, 혹은 학교 후미진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 의해 어떠한 식의 성폭력이 가해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어떤 특정한 생김새, 나이, 처립새와 관계없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그런 일이...'라고 몰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돌리고 싶어하는 여학우 당신에게도 갑작스레 이러한 일이 닥쳐질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위에 예시해 놓은 것들은 그야말로 학생회, 동아리, 과, 심지어 도서관에서 발생한 개인 대 개인의 침해로서의 성폭력이다. 그러나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학우라면 처음에 신입생 환영회에서부터 대학 사회에서의 주류인 남학우와 그들의 남성적인 방식들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공동체 활동에서 극심한 소외를 느끼게 된다. 과 나 동아리에서 이른바 '재미'로 성적 농담 및 음담패설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집단 전체가 불러야 하는 노래 가사엔 성적 용어들이 난무하다. 남학우들은 진정 자신의 생물학적 욕구를 시도 때도 없이 발산시켜야만 생활할 수 있는 야만인들인가? 그들이 하는 행위는 결국 대학 사회에서 자신들이 '다수'라는 것을 이용한 공공연한 억압일 뿐이다. 이것은 여타의 폭력과 별 다른없는, 즉 상호간의 어떠한 동의 이전에 일방적으로 '강자'임을 과시하고자 하는 폭력 그 자체이다.

그러나 문제를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남자들은 다 늑대고, 성충동에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무모한 존재들이니 여자들아, 과사립이거나 동아리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고 다시 한 번 의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은 남학우, 심지어 지금까지 어떠 어떠한 무자비한 폭력을 행한 남학우에게조차 그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쏘여 있지 않다. 앞서 성추행을 저지른 한 학우의 말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대부분 이러한 폭력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수행된다. 역사적으로 성적 본능이란 일관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현사회는 남성들의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고 묵인하고 있다. 즉 현사회는 성적 본능과 폭력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사고한다. 힘의 논리에 의해 관철되는 사회, 특정 권력이 전영역을 넘어서 관철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서의 폭력적 행동 양식이 공공연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일부일처제 뒤에 매춘이 육성되고 있듯이, 폭력 없는 사회를 외치는 문구 뒤에는 각종 무시무시하고 더러운 폭력들이 설친다.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바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성(性)이, 우리의 성본능이 사회에 의해서 또한 폭력적으로 강요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3.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우리는 93년 서울대 화학과 우조교 사건을 기억한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2심판결 결과는 현 사회의 내재적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적어도 다시 한번 성폭력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토록 했다. 2심 판결문에서 "성적 괴롭힘은 그 성격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간취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장은 성폭력을 가해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또한 "한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그 침해하는 자 측에서 보아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것일 때에는 그 근로자는 그 직장을 떠나지 않으려면 또는 그가 그의 업무를 충

실히 수행하려면 그 침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면은 재판부가 남성 위주의 현실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학내 성폭력 중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은 어떠한 구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먼저 폭력이 느껴지는 정도란 실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얼마만큼의 강제력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성폭력이라 하더라도 유아에게 행해지는 것이 성인에게 행해지는 것보다 더 폭력적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학생에게 있어 교수라는 존재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이다. 교수는 학생들의 학점을 관리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하며 학생들의 진로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관계와 남성의 성적 우월성이 결합되어 성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실상 피해자는 적절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장 자신의 미래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교수-학생 간 성폭력의 문제는 어느 특정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까지도 모조리 감수해야만 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까이는 대학 사회의 봉건제적 권력 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하겠다.

마치며

대학이라는 공간은 이른바 지성과 교양의 산실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으로부터 가장먼 거리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결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문제시되는 것은 그야말로 대학 사회가 외부 사회에 대해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부 사회는 '가진자'들의 권력이 어떠한 합의된 기준을 초월하여 사용되는, 이른바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선천적으로 '가진자'로 규정되는 것이 바로 성(性)이다. 단지 그대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것은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학내 성폭력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될 수 있다. 먼저 교수-제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수로부터 배제된 소수의 여성이라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교수와 학생 사이의 힘의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것인 만큼 그 억압성이 다른 것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학생-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그것은 학내의

문화적 성격이 남성적이라는 것, 소수인 여성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배제된다는 점 때문에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성폭력은 말 그대로 '폭력'이며 그것은 다른 아닌 '권력'의 문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성폭력의 문제를 권력의 문제가 아닌, 특정 개인의 '도덕'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 현 사회에서 성 본능이라는 부분은 사회 전체 맥락과 함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그 누구라도 그다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다 그러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의 문제는 특정 개인의, 정신 이상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정신이 상자를 감옥이나 병원으로 모조리 보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과연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본능에 대해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성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자기도 모르게 어찌 어찌한 것이 저절로 나의 성욕, 나의 성본능이 되고 만다. 각종 피해 의식과 건강하지 못한 성에 대한 사고를 갖게끔 하는 현 사회 구조의 각종 권력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만이 성폭력의 문제를 성 자체를 금기시하는 방식이 아닌 대안적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을 사는 남성과 여성이여,
당신들은 자연과 사회에 의하여 관철된 육체에 지나지 않다.
게다가 당신들은 자신의 육체나 자연, 사회도 알고 있지 못하다.
요컨대 성적 본능은 사회기구의 산물이다.

오늘을 사는 남성과 여성이여,
우리는 우리의 성적 본능에서 자신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폭력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제 본래적 성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정치적 문제만이 있을 뿐이다.

<프랑스 5월혁명 중에서>

부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 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중 제 242조(음행매개), 제 243조(음화동의 반포등), 제 244조(음화동의 제조등) 및 제 245조(공연 음란)의 죄

2.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한 제 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 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 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 제 293조(상습범, 다만, 제 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 294조(미수범, 다만, 제 288조의 미수범 및 제 292조의 미수범중 제 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 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 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 32장 정조에 관한 법중 제 297조(강간), 제 298조(강제추행), 제 299조(준강간 준 강제추행), 제 300조(미수범), 제 301조(강간등에 의한 치사상), 제 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 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 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 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 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②제 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①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제331조(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특수강간 등)

①총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존속 또는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제5조 내지 제8조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미수범)제5조 내지 제1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1조 제12조(제1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관찰)

①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③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

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한다.

제17조(보호감호)

제5조 내지 제12조의 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의 별표에 규정된 죄로 본다.

제18조(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고소기간)

①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 제9조(소송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조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심리의 비공개)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성폭력피해 상담소 등

제23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사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담소의 업무)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3.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호시설의 업무)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 각호의 일
2.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3.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우는 일
4.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7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23조 제2항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사 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허가의 취소 등)

사 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 제3항 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30조(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 제2항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의료 보호)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사 도지사는 국 공립병원 또는 보건소를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

보건사회부장관과 사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업무를 위반한 자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록

연세대 사태 인권유린에 대한 성명

우리는 8월 12일부터 최근까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문민시대 최악의 암흑을 목도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지 한총련 소속 5889명 연행, 456명 구속, 440명 기소라는 사상 최대의 통계 때문만은 아니다. 이 통계수치에 얼룩진 비참한 인권유린의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진압 전부터 식량은 물론이고 의약품과 여성용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자식을 찾으려는 부모의 발걸음마저 가로막는 등 상식아래의 작태를 보였다. 최대의 극한 상황인 전쟁시에도 보장하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천천히 짓밟는 상태에서 연세대 학생들에 대한 진압이 이루어졌다. 경찰봉에 짓이겨지고, 언론에 의해 철저히 감추어졌던 진압 당시의 상황과 조사과정의 진실이 피해학생들의 호소로 하나씩 밝혀지면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경찰의 구타에 의한 부상은 다반사였으며,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경찰력의 문제를 넘어 인간에 대한 비애를 느끼게 하였다. 종합관에서 앞사람의 허리를 붙잡고 내려오는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는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당한 것으로 점차 확인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추행 외에도 여학생들에 대해 '사수대 위안부-정신대-기쁨조'라는 모멸적이고, 도착적인 용어를 써가며 극도의 수치심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여학생들에 대해 '소환하여 재수사하겠다'느니 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경찰의 작태에 이르면 주소불명의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된다. 3일동안 굶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발로 차기도 하였고, 폭력에 항의하는 남학생을 집단으로 구타하여 피투성이가 되게 하였다. 일본군 등 외국 침략군에 의해서만 가능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한을 타리, 한형제의 품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연세대 사태를 전후한 이와같은 인권유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행위로써 민족사의 수치이다. 위법한 것에 대해 정부는 그를 계도하고 처벌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인권을 탄압할 권한을 우리 국민은 전혀 준 바가 없다. 이는 독재이다. 우리는 현 정부가 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독재세력과 아합한 허울만은 문민이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실시하라.
2.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3. 정부는 공식사과하고 박일룡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진압전경 및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라.
5. 언론은 참혹한 인권탄압의 현장을 덮으려는 범죄행위를 중단하라.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사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사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사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납부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7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2조의 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장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6 및 제5조의 7을 삭제한다.

1996년 9월 13일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계열대표자회의, 가정여교역자협의회, 동학민족통일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서울연합, 경기남부연합, 성남연합, 한노협,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4월혁명연구소, 서울거리사랑지역운동연합, 서울민주시민연합,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교무단, 연세대민주동맹, 인권운동사랑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대학민주동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대협동우회, 참교육사민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일맞이7천만가레모임,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민위, 한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지협의회

부록

■ 고발장 요지

1. 고발인 :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명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양해경(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 소장)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 회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이기옥(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형규 목사(한국교회 인권센터)
2. 피고발인 : 8월 20일 연세대 종합관 진압 경찰
현장진압책임자
박일룡 경찰청장
3. 고발내용

(1)진압경찰의 혐의에 관한 부분

① 성추행 부분

1996년 8월 말경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1996년 8월20일 연세대 종합관에서 여학생들을 남학생과 분리하여 연행하던 중 다수의 여학생들이 진압경찰에 의해 신체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 사건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그늘에서 존재해 온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전형이며 최소한의 반항조차 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분위에서 경찰이라는 법의 집행자 다수에 의해 행해진 범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악명이 보장되어 다수의 경찰이 지극히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그러한 경찰의 행동양식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감과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공포분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진압상황 속에서 연행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진압경찰의 행위는 익명보장과 경찰이라는 지위의 위력으로 인해 더욱 공포스럽고 무차별적인 행위로 나타났을 것이며 반항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는 묵과할 수 없는 인권유린인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② 언어 폭력 부분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996년 8월 20일 새벽 연세대 종합관에서 연행되던 중 다수의 진압경찰들이 심한 성적모욕감을 주는 언어폭력을 가하였다. 사회적 통념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발언은 말 그 자체로 성추행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얼굴이 못생긴 것들이 꼭 데모잖아, 아무도 안놀아 주니까 꼭 데모를 해 요, 야, 맞지? 남자들에게 퇴짜를 맞으니까, 야, 보지는 어떻게 씻었나? 어휴 드러운 년들, 열흘동안 닦지도 않았지? 압착내란다. 야, 얼마나 대짖나? 사수대 수고했다고 그자해짖지? 좆 값은 년들" "너희 사수대 정신대지? 우리몸이나 풀게 해주지" "너희는 씹혀봤나?" "이런년들은 다 북에 보내서 김정일 기쁨조나 시켜야 돼!" "너희, 사수대 기쁨조지?" "잘씻지도 못했지? 지저분한 년들" "이 참녀만도 못한 년들아, 588이나 가라." "이런년들은 일본이나 외국으로 다 수출해버려야 한다." "너네가 김정일 기쁨조나, 북한으로 다 보내버려야 한다." "너네, 사수대 남자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밤에 뭐했나? 사수대한테 몸대주고 살았지?" "밀을 도려내겠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러한 성추행적인 언어폭력은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발언으로서 당시 극도의 공포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볼 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일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가 반항못하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언어폭력을 가한 것은 다분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가 있는 것이다.

(2) 현장진압책임자에 대한 고발

8월 20일 있었던 일련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바 다수의 진압경찰이 유사한 형태로 대규모의 성추행을 가한 것은 현장 진압 책임자의 지시와 방조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3) 총책임자 박일룡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박일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총지휘책임자로서 다수의 진압경찰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토록 예방, 교육하지 않았고 오히려 1996년 9월 10일 일선 경찰서로 내린 업무지침에서 '공권력 도전행위의 제압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는 불문에 부치겠다' 라고 지시함으로써 성추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해야하는 경찰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기에 <공무원 직무유기>혐의로 검찰당국에 고발하였다.

내려오다가 전경이 가슴을 만지는데 화가 나서 '씨'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전경들이 반항한다고 막 욕을 하면서 때렸어요. "나년들이 데몬질이나 하고 그런 자격 있나 588이나 가라 이런년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해버려야 한다. 나네가 뭐 김정일 기쁨조냐 북한으로 보내라. 나네 사수대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밤에 뭐했나 사수대한테 나네 몸대주고 살았지" 어떤 전경이 그러더라고요. "나네 우리가 올라갔으면 반 죽여 놔서 이렇게 곱게 내려오게 하지도 않았다. 나네 우리 차에 타기만 해봐라. 다 강간해 버릴꺼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다른 때같았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강간해 라고 우습게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겁이 났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그 차에 갇을때 능히 강간조차 하겠구나 그때 상황에서 저희는 너무 무력했었고 많이 힘도 없었잖아요.

조서받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고개 숙여 !고개숙이다가 다시 올라고 고개들! 다리를 벌리고 앉으라고 했어요. 다리를 벌리고 고개를 들고 있는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저희들의 따귀를 때리는데 정말 비참했어요.

전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깎지껴서 머리위에 올리고 오리걸음으로 계단까지 갔는데 가는 도중에도 전부 죽여버리겠다며 구타가 계속되었습니다. 6층부터 내려오는데 계속때리다가 4층쯤에서 기자들이 있었는지 전부 끌어안히고 기자들이 있으니까 때리지 말라고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리는게 좀 덜하고 무릎꿇고 앉아 있다가 조금후에 내려갔는데 손을 너무 많이 맞아서 손을 만지면서 허리를 약간 쫓았는데 그 때 전경들이 곤봉으로 배를 때리고 가슴을 쥐고 내려갈 때 뒤에서 손이 올라와서 음부쪽을 만졌고 그 때 사람들에게 말해서 내려가느라고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려가면서 계속적인 구타가 이어지면서 여학우들에게는 이 빨갱이년들 집에서 밥이나 해 먹이지 하면서 욕을 했었습니다.

<피해자 인터뷰 녹취록 중에서>